

2026년도 「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」 사업 훈련참여 대상기관 모집 공고

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2026년도 「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」 사업에 참여할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3일

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

I. 사업개요

- 청년·여성 등 다수 종사·선호 직종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숙련 기능인의 손끝기술 전수 체계 마련 및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
- 건설현장 고령화,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등에 따라 청년층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, 현장실습 및 포레 네트워크 지원 등 현장성을 반영하고, 숙련 수준 및 훈련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

1 사업 추진방식 및 역할

- ☐ 공제회는 훈련요건을 갖춘 훈련기관(과정)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,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(약정체결)
- ☐ (공제회)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의 역할 수행
- ①실생활공간 구성과정, ②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훈련기관(과정) 공모 및 선정
-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

- 훈련생 출결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
- 훈련 실시상황 지도·점검(정기)
- 훈련비·훈련장려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
-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홍보 활동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
-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수행

□ (훈련기관) 공제회와 체결한 약정 내용에 따라 훈련 실시

- 훈련목적에 부합하는 훈련생 선발, 훈련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철저한 훈련과정 운영(출결, 일일진도관리 등) 등을 통한 훈련 내실화 추구
-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교육 필수 편성·실시

- 「안전보건교육규정」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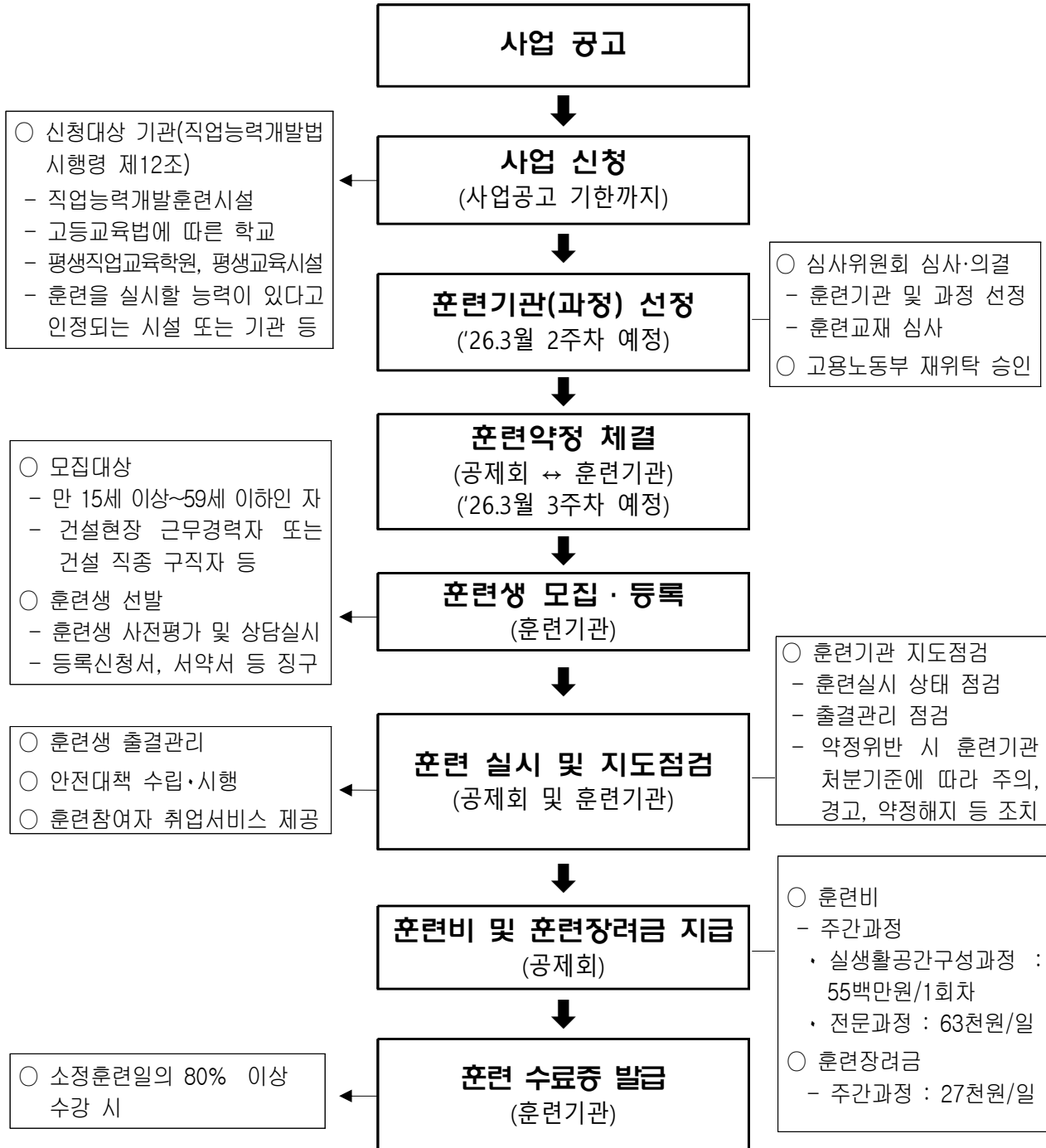
* 회차별 1회 이상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및 안전보건 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77호) 참고)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훈련생 및 훈련기관 직원(훈련교사, 행정취업지원 직원 등)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*

* ▲훈련생 : 회차별 1회 이상 ▲훈련기관 직원 : 연 1회 이상

- 훈련생 등록 및 출결관리(QR코드,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등 이용)
-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및 안전대책 수립·시행
- 훈련 참여자에 대한 취업서비스 제공 철저(취업률 제고)
- 훈련약정 위반 시, 훈련비용 부지급 및 반환청구 결정 등 조치사항 준수

2 추진절차



II. 공모 개요

1 사업기간

□ 2026년 2~3월(약정체결일) ~ 12월

2 참여대상 기관

□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실시요건을 갖춘 기관

-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

훈련기관 자격 요건 및 위탁 제한

- ①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또는 법인)
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③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 - ④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 - ⑤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 - ⑥ 위탁제한
 - 1) 타 직업훈련기관에 재위탁 불가
 - 2) 훈련기관의 중대 귀책사유로 실업자훈련과정 훈련기관 지정취소, 훈련 위탁해지 및 위탁배제 등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(제한) 기한이 미경과한 기관
- ※ (고용노동부, 기업인력개발지원과-309, '08.8.28) 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이 “인적·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(훈련교사, 훈련시설, 장비 등)”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평가등급 등이 포괄승계됨

- 건설 직종 훈련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훈련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(또는 단체)

※ 단, 신청시 해당 훈련 위탁기관장의 추천서 필수 제출(공제회 훈련 제외)

3 훈련과정 신청

□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및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6개 훈련직종에 대해 구분하여 신청

- (실생활공간 구성과정) 입문과정(주간) 기준, 프로젝트 완성형 복합공중 훈련과정
- (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) 심화과정(주간) 기준, 형틀목공, 특수용접, 타일, 건축배판, 마루, 조정 중 1개 직종을 선택
- (학급 및 과정 신청제한) 훈련기관별 훈련과정 신청은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및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각각 1개씩 신청 가능하며, 과정별 훈련 회차는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은 2회차까지,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3회차까지 가능
- 훈련과정은 가급적 연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
- 학급당 정원은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은 15명 기준,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최소 10명, 최대 20명으로 편성
- 동일한 실습장소, 동일 장비, 동일 교사를 중복하여 여러 과정 신청 불가

4 훈련참여대상

- (참여대상) 훈련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이고 아래 과정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(실생활공간 구성과정) 건설업 입직 희망자, 직업안정기관 및 공제회 취업지원시스템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
 - (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) 건설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, 건설업 근로 유경험자, 해당 직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, 공제회 훈련과정 기 수료자 등
 - (수강횟수 제한) 훈련생 개인별로 ①실생활공간 구성과정 1회, ②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2회(직종 무관)
 - ※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기능 반복 숙달을 위해 재수강 허용
 - ※ 실생활공간 구성과정 수료생은 단일직종 숙련을 위해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 허용

- (참여 제외대상) 만 15세 미만 및 만 60세 이상인 자,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의 훈련시간과 중복하여 수강 중인 자,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, 기타 개인사정상 건설현장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5 지원기준

- 확정 훈련생이 1일 5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한 경우,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급

◆ 「확정 훈련생」이란 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훈련일수 기준 5일 중 3일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함

- 확정 훈련생에서 제외된 훈련생(5일 중 3일 미만 참여자)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, 훈련생 등록을 취소함

○ 당월 훈련비(훈련기관)와 훈련장려금(훈련생)은 익월에 월단위로 지급

- (훈련비) 훈련기관에 전체 확정훈련생의 단위기간(1개월)* 출석률**에 따라 지급

*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기간으로 매 1개월 주기로 구분

** 출석률 = { 단위기간(1개월) 출석(인정)일수 ÷ 단위기간(1개월) 소정훈련일수 } × 100

※ 단,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비는 훈련 종료 후 지급

- (훈련장려금) 확정훈련생에게 월 출석(인정)일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

-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훈련장려금 미지급

훈련장려금 미지급 사유

- ① 확정 훈련생이 연속결석으로 인해 중도탈락 시, 중도탈락된 날이 포함된 월의 훈련장려금 미지급
- ②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
- ③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
- ④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명칭에 상관없이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
- ⑤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과 공공근로사업 또는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중복된 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미지급

구 분	실생활공간 구성과정	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
훈 련 비	55백만원/회차당	63천원/일
훈련장려금	27천원/일	

III. 과정편성 · 시설 · 장비 등

1 과정편성

□ 고용노동부 훈련기준 고시 및 공제회 훈련교재 등을 참고하여 편성

○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20호)

직종명	형틀목공	특수용접		타일	건축배관	마루	조경
세분류	건축목공 시공	CO2 용접	가스텅스텐 아크용접	타일시공	배관시공	수장시공	조경시공
직종코드	14030201	16010502	16010503	14030204	14030305	14030209	14050102

○ (훈련교재) 공제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발 보급한 교재 활용 권장

- (공제회 교재) 도장, 조적, 방수, 미장, 타일, 철근, 배관, 형틀목공

※ 교재 파일위치 : 건설e음(eum.cw.or.kr) - 하단 왼쪽 "자료실" - 교육자료 - 훈련/취업

※ 공제회 개발교재는 직종별 도면교육 및 공사 안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

□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은 40일(240시간) 연속 훈련과정으로,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1일 완성형 모듈식 심화 훈련과정으로 20일(120시간) 편성

○ 현장성 높은 훈련을 위해 집체(실습)훈련으로 구성

- 개인별 1일 차 수업은 반드시 훈련과정의 상세교과를 안내하고 기능 훈련의 목적 등을 제시하는 오리엔테이션(훈련생 수준파악→학습 조 편성 시 반영)을 실시

- 주간 1일 6교시를 기본으로 1교시는 이론·2~6교시는 실습* 위주로 일정 편성

* 실습실에서의 현장중심 훈련을 의미하며, 강의실에서 캐드 등의 강의는 불인정

- (이론) 실습과 관련된 이론 및 해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 예방 내용을 당일 교육에 필수 편성
 - (실습) 훈련과정별 훈련계획에 따라 실습훈련 실시
 - 훈련기관은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훈련환경 조성 등 내실화를 위해 건설업의 이해 및 비전, 안전보건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편성
 - 「안전보건교육규정」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(4시간) 실시
 - ※ 단,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(심화과정)의 경우 생략 가능
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훈련기관 직원 및 훈련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(1시간)
 - 신규 입직자의 건설업 정착을 위해 도면보기, 건축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공구 사용법, 용어, 안전 등 건설현장에 대한 기초지식 강의 포함
- 각 훈련과정은 다른 훈련사업이나 다른 훈련과정과 합반하여 운영할 수 없음

2 훈련시설

- (공통사항) 신청기관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령상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가급적 준용하되, 시설은 아래의 시설기준면적을 적용
- 비영리법인(단체)인 경우에는 인가면적 외에도 실제 훈련시설면적도 인정. 단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(현장실사 후 인정)

과정별, 직종별 시설기준면적 (명, m²)

과정 및 직종	기준인원	실습실	강의실
◆ 실생활공간 구성과정	15	150	45
◆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			
형틀목공	20	150	45
특수용접	20	130	45
건축배관	20	120	45
타일, 마루, 조경	20	100	45

- ※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시설기준면적은 훈련인원 15명, 3개조(3개 부스) 기준
- ※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직종별 시설기준면적은 훈련인원(최소 10명)에 비례한 최소 시설면적으로 해당 기준 충족여부 확인(현장실사 등)
 - 직종별 시설기준면적은 NCS 홈페이지 (NCS활용 - 훈련과정설계 - 훈련기준 검색) 참조
- ※ 실외 훈련과정의 경우 야외실습장을 활용한 훈련시 적정할 경우(비가림 시설 보유) 실습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
- ※ 강의실은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공용 사용 가능하나, 합반 운영 등 동일 시간(공간)에 훈련할 수 없음

3 훈련장비

- 훈련 신청 과정별 · 직종별 훈련에 필요한 주장비 · 보조장비 등을 구비
 -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직종별 장비기준(별첨)에 명시된 직종별 장비는 반드시 구비
 - ※ 고용노동부 고시 「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」(제2025-20호, '25.04.01.)의 직종별 장비 목록을 참고
 - ※ 현장실사 시 모든 기자재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, 미작동되는 기자재의 경우 미보유로 간주
 -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은 공종별 장비기준(별첨)을 각각 구비하되, 중복장비는 최대수량 직종 기준으로 적용

4 훈련교사

-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건축 시공기능장 또는 기능등급 고급 이상이면서 기능등급제 교·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*
 - * 실생활공간 구성과정의 훈련교사로 위촉하기 위해 숙련기능인 대상 교원 양성교육을 '26.2월 중 추진예정
 - ※ 단, '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'의 훈련교사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족함

‘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’에 관한 사항

①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

제33조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.

②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시행령

제27조 법 제3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 및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4.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5.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
※ 훈련교사는 훈련직종 현장실무경력(경력증명, 재직증명 첨부)이 있고, 이론 설명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함

5 훈련교재

□ 공제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발 보급한 교재를 활용 권장

※ 직종별 교재는 건설e음 홈페이지(eum.cw.or.kr) 교육자료 참고

- 교재 파일위치 : 건설e음(eum.cw.or.kr) - 하단 왼쪽 “자료실” - 교육자료 - 훈련/취업

※ 공제회 발간 훈련교재는 직종별 도면교육 및 공사 안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

IV. 신청 및 선정절차

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□ (신청기간) 2026. 02. 13.(금) ~ 2026. 02. 27.(금)

※ 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□ (신청방법) 신청서류는 행정안전부 문서24(docu.gdoc.go.kr)에 과정보로 공문 접수

※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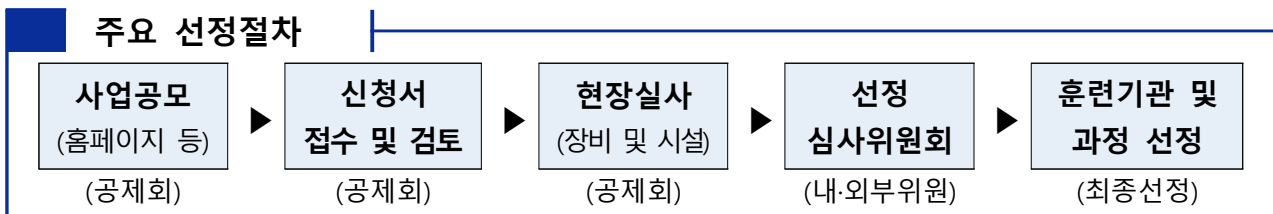
- ▲ 문서24 제출 시 **과정별로** 공문 및 신청서류 접수하고 문서제목은 (기관명) 2026년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참여 신청(과정명 또는 과정명-훈련직종)으로 신청서류(첨부파일)는 기관명(과정명 또는 과정명-훈련직종).hwp 표시
 - ↳ (예시) (○○직업전문학교) 2026년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신청(실생활공간 구성과정)
 - (○○직업전문학교) 2026년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신청(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-타일)
- ▲ 파일은 신청서류에 직인 및 붙임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**1개의 한글파일로 제출**

2 제출서류

- 훈련참여 희망기관은 신청 과정별로 다음 서류를 각각 작성·첨부하여 공제회에 접수
 -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신청서(서식 1)
 - ※ 신청서 작성 시 훈련기관의 운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실적 등을 <붙임>으로 추가 제출(요구) 가능
 - 사업신청기관 개요(서식 2)
 -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훈련계획서(서식 3)
 -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훈련대상자 모집·취업지원계획서(서식 4)
 - 훈련기관 추천서(해당 기관만 제출)(서식 5)
 - 기타 훈련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
 - ※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3 선정방법

주요 선정절차



○ (현장실사)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시설, 장비 등을 확인

※ 공모 마감일부터 현장실사 가능

○ (심사위원회 심사) 공제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, 신청기관이 제출한 훈련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

※ (심사항목) 훈련생 모집·취업지원방법 및 훈련계획의 적정성, 훈련실시능력, 훈련전담 인력 등을 심사

4 선정결과 발표

□ 발표일자 : 2026. 03. 20.(금) 예정

※ 선정결과 발표는 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(www.cw.or.kr) 및 건설e음 홈페이지(eum.cw.or.kr)에 게재하고, 선정기관별로 개별 통지(예정)

○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 1개월 이내 훈련약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5 접수 및 문의처

□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취업부(02-519-2122~2126)

○ 주소 : (04522)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, 13층(건설근로자공제회빌딩)

※ 훈련사업 신청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로 접수

붙임 1. [서식]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신청서

2. [서식] 사업신청기관 개요

3. [서식]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훈련계획서

4. [서식]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훈련대상자 모집·취업지원계획서

5. [서식] 훈련기관 추천서
6. 건설기능인력 집중육성사업 과정별, 직종별 훈련 장비기준(별첨)
7.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20호)(별첨)